금융위원회	보도참고자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 시	배포 일시	2022. 8. 12.(금)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	책임자	과 장 변제호 (02-2100-2830)
		담당자	사무관 김수빈 (02-2100-2833)

「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」 첫 회의 개최

- 새정부 국정과제인 내부통제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하여 내실있는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 계획 -

1 문제의 인식

□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, 직원횡령 등 **금융권 사건, 사고**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

○ 개별 위법행위자를 제재·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,

- 금융회사 차원에서 **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적정했는지 여부**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○ 특히, 개인 또는 일부의 일탈행위가 **금융회사 손실 및 소비자 피해**와 함께 **금융권 전반의 신뢰하락을 초래**한 만큼,

- **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나 임원이 직접 책임**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

□ **내부통제**는 금융회사가 장래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줄이는 등 목표달성을 위해 임직원의 업무처리 및 행위와 관련하여 **스스로 마련·운영하고 준수해야 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**를 의미합니다.

* (BCBS, 「내부통제시스템 준칙」('98)) 회사의 목표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용·시장·운영리스크 등 내·외부의 모든 주요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분석 필요

○ 모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, 실제 **회사별로 그 수준과 범위에 차이**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

- **내부통제를 비용이나 불편한 절차로 인식**하는 금융회사의 경우, 매우 낮은 수준으로, 또는 형식적으로, 운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.

□ 이에 따라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'16.8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해 **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**를 부과하고,

○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뿐 아니라 **담당 임원도 제재**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모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**공통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율**하고 있습니다.(지배구조법 제24조)

* **제24조(내부통제기준)**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,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,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(이하 "내부통제기준"이라 한다)를 마련하여야 한다.

별표(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) 25.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
□ 현행 규정체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**외부통제로 규율하는 방식**으로,

○ 금융회사들이 **내부통제를 구축·운영**하는 과정에서 **다양한 불확실성과 실효성과 관련된 쟁점이 제기**되어 왔습니다.

2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방향 및 T/F 운영계획

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,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/F **운영**을 통해 **새정부 국정과제*인 「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」**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

* (국정과제 34)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

□ T/F에서는 **❶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**와 **❷**입법취지 구현을 위한 **바람직한 규율방식**, **❸실효성 확보방안**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·논의할 계획입니다.

❶ 우선, 금융회사들의 **내부통제 운영실태**가 내부통제에 대한 **규율·입법취지에 부합**하는지 검토하겠습니다.

- **내부통제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구현**해야 하는 만큼,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·운영되도록 촉매하는 내부통제 규정의 **입법취지**와, **실제 운영실태 간 괴리**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

❷ 제도적으로는, 내부통제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**최적의 규율방식** 관련,

- 현행 "**규정중심**(rule-based)" 규율체계 하에서, 각 금융회사가 최소한으로 구비해야 할 **기준을 강화**하는 방식으로 진행할지,

- 구체적 열거사항은 최소화하고 주어진 원칙 하에서 세부사항을 스스로 마련·판단하도록 하는 "**원칙중심**(principle-based)" **규율방식도 병행 또는 전환**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

❸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의 **적용범위, 권한과 책임구조** 등에 대해 **명확히 인식**하여 **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갖출 수 있도록**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.

- 특히, 금융사고 발생시 **누가 책임지는지, 책임소재는 어떻게 구분·판단할지 등을 명확히** 함으로써 **내부통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**하도록 하겠습니다.

□ 이러한 논의주제를 바탕으로 T/F에서는 **해외사례** 및 **금융권의 실제 운영실태** 등에 대한 조사·분석을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해나가는 한편,

○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**범금융권 간담회**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.

□ T/F는 **내부통제 운영업무에 정통**한 법조계·업계로 구성된 "**작업반**" 과, **전문성·중립성이 보장**된 학계중심의 "**심의회**" 의 **이원적 구조로 구성**됩니다.

○ 작업반에서 논의된 사항을 심의회에서 심층 검토·심의함으로써, **다양한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**될 계획입니다.

3 금일 T/F 킥오프회의 주요 논의사항

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일(8.12일) 13:30부터 **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 주재**로 **내부통제 제도개선 T/F** 킥오프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

* (일시/장소) '22.8.12일(금) 13:30-14:30 /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
(참석자) 작업반 및 심의회 구성원 전원 (☞참고)

○ 금일 회의에서는 **❶금융권 내부통제 운영실태의 문제점** 및 **❷해외 주요국 내부통제 운영사례**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.

□ **김용재 상임위원**은 "내부통제체제가 **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**, 국지적 위험요인이 **순식간에 全社적으로 확대·전이**되어 금융회사 **건전성이 훼손**되고, **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**할 수 있다"고 강조하면서,

○ "각 금융회사가 자신에게 필요한 **내부통제체제를 갖추고, 작동**시킬 수 있는 **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줄 것**"을 당부하였습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	책임자	과 장	변제호 (02-2100-28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수빈 (02-2100-2833)
<공동>	금융감독원 감독조정국	책임자	국 장	이창운 (02-3145-8170)
		담당자	팀 장	이정두 (02-3145-818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1 「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/F」 구성

구 분	구 성	
<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작업반 >		
금융위원회	김 용 재	금융위 상임위원 (주재) ※(간사) 금융정책과장
금융감독원	이 창 운	금감원 감독조정국장
법 조 계 (2)	김 시 목	법무법인 율촌 변호사
	정 찬 묵	법무법인 세종 변호사
협회·연구원 (3)	이 효 섭	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
	정 재 호	은행연합회 법무지원부 팀장(변호사)
	최 재 형	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 차장(변호사)
외국계 (2)	김 성 은	Goldman Sachs(Asia) 법무부 본부장(변호사)
	임 규 채	J.P.Morgan증권 서울지점 준법감시부 본부장
<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심의회 >		
금융위원회	김 용 재	금융위 상임위원 (주재) ※(간사) 금융정책국장
금융감독원	이 명 순	금감원 수석부원장 (공동주재)
학 계 (5)	김 홍 기	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	장 덕 조	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	정 준 혁	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	천 경 훈	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	최 승 필	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
참고2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관련 조문

「금융회사 지배구조법」 제24조(내부통제기준)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,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,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(이하 "내부통제기준"이라 한다)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」 제19조(내부통제기준 등)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(이하 "내부통제기준"이라 한다)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
2.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
3.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,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
4.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
5.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
6.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·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
7.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(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)
8.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
9.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
10.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(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)
11.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(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)
12.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·관리
13.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② 금융회사(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)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

③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